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45
----------	-----------

제출연월일	2009. 11. 1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랑 사이버 군민화를 통한 군 발전 인적자원 발굴을 도모하고, 도·농 간 정보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여 군에 대한 관심유도 및 홍보를 통한 군세확장과 더불어 대 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사이버거창군민의 자격 및 등록, 지원사업, 혜택 등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주자들 누구나 군과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자는 사이버거창군민이 될 수 있음
- 사이버거창군민은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음
- 군수는 사이버거창홈페이지를 군청 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구축·운영하고 사이버거창군민약관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며, 사이버거창홈페이지의 개선, 민간교류 활성화, 각종 정보의 제공, 이벤트 등 개최, 사이버거창가맹점 확보 및 관리 등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이버거창군민에게는 사이버거창군민증 수여, 수송대 관람료의 면제, 사이버거창가맹점 발행 할인쿠폰 제공,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각종 정보의 제공,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사이버거창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와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 교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주선할 수 있음

다. 사이버주민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사이버주민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그 밖에 다른 조례의 준용, 시행규칙등 조례의 절차적·보충적인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27,600천원(2010년 본예산에 반영)

다. 협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행정과(주민자치담당, 정보화담당), 농업기술센터(농정과 농촌개발담당), 문화관광과(관광담당), 수송대관리사무소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1차(당초) : 2009. 9. 24. ~ 2009. 10. 13.
  - 2차(수정) : 2009. 11. 3. ~ 2009. 11. 12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랑 사이버 군민화를 통한 군 발전 인적자원 발굴을 도모하고 도·농 간 정보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여 거창군과 사이버거창군민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가상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으로서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구축한 “거창 愛 살어리랏다”(이하 “사이버거창홈페이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 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가 있거나 거창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거창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사이버거창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거창군민”이란 거창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거창 발전의 원동력이 될 가상의 군민으로서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자와 사이버거창군민 가입신청서를 본인이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사이버거창군민증”이란 사이버군민제도의 사이버거창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5. “사이버거창가맹점”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인, 음식·숙박업, 레저·스포츠업 등 사이버거창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인을 말한다.

6. “사이버거창군민약관”이란 사이버거창군민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입·탈퇴·이용방법·규제 및 분쟁의 조정 등 사이버거창군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제2장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제3조(자격) 사이버거창군민은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주자들 누구나 거창군과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자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 ① 사이버거창군민이 되려는 자는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약관동의, 군민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사이버거창군민 등록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사이버거창군민 가입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거창군민으로 가입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이버거창군민증을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한 사이버거창 홈페이지를 군청 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구축·운영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거창군민약관을 정하고 사이버거창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거창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거창군과 사이버거창군민 간 또는 사이버거창군민 상호간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사이버거창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4. 사이버거창홈페이지의 활성화와 사이버군민제도의 조기 정착, 사이버거창군민 발굴 등을 위한 각종 이벤트(Event) 개최
5. 사이버거창가맹점 확보 및 등록승인 등 관리
6. 사이버거창군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7. 그 밖에 사이버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투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군수는 사이버거창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1. 사이버거창군민증 수여
2.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 관람권)
3. 사이버거창가맹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할인쿠폰(Coupon) 제공
4. 군의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5.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농산물 특판행사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6. 사이버거창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이벤트나 퀴즈행사,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사이버거창홈페이지의 이용실적에 따라 별표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를 쌓은 사이버거창군민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 등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에 따른 주요 결정사항
3. 사이버군민제도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이버군민제도의 추진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1010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이버거창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 눈썰매장 이용자 및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에 따른 사이버거창군민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별표]

## 포인트(Point) 적립 및 교환(지급) 기준(제6조제7호 관련)

- ◎ 시행 일 : 사이버거창홈페이지 오픈 ~
- ◎ 제공대상 : 사이버거창군민 가입회원 누구나
- ◎ 적립기준 : 1 포인트(Point) 사과 1알로 표기
  - ▶ 회원가입 : 1,000알
  - ▶ 글 게시(체험수기 등) : 500알
  - ▶ 사진, 행사 게시 : 400알
  - ▶ 로그인 시 : 100알(1일 최대 300알)
  - ▶ 체험 UCC 게시 : 600알
- ◎ 적립 포인트 교환(지급)기준
  - ▶ 10,000알(Point) : 사이버 농원 농산물 체험권(5,000원권) 지급
  - ▶ 20,000알(Point) : 사이버 농원 농산물 체험권(10,000원권) 지급
- ◎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안) : 「붙임 별지 제5호서식」 참조
- ◎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 교환방법 :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 ◎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 사용
  - ▶ 사이버 군민이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지에 우선 사용
  - ▶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장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정산
- ◎ 포인트(Point)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2년 / 회원 탈퇴 시 소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b>사이버거창군민증</b>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사이버거창군민임을 증명합니다.	
<b>거 창 군 수</b> <input type="text" value="직인"/>	
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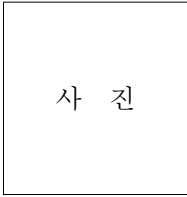
85mm×55mm

[별지 제3호서식]

## 무료 관람권

거창캐릭터  
삽입 사이버거창군민

**무료 관람권**



**수승대관광지**

**무료입장**

사용기간 : 매년 7.1 ~ 8.31(2개월)

문의전화 : 055-

사용방법 : 사용 전 제시

NO. 09/05/02-개인아이디

**사이버거창군민이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거창군과 사이버거창군민간의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  
여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활력  
창출 도모

발행일 :    년    월    일

\* 본 무료 관람권은 1인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 관람권 사용 중 불편사항은 055-940-3413으로 문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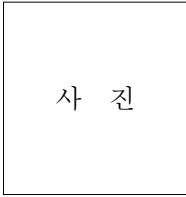
160mm×80mm

[별지 제4호서식]

## 할인쿠폰

거창캐릭터  
삽입

사이버거창군민  
**할인쿠폰**



**홍길동 식당**

총금액 %할인

할인기간 :

문의전화 : 055-

사용방법 : 사용 전 제시

NO. 09/05/02-개인아이디

**사이버거창군민이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거창군과 사이버거창군민간의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  
여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활력  
창출 도모

발행일 :    년    월    일

\* 본 쿠폰은 1회 1장만 사용가능합니다.

\* 쿠폰 사용 중 불편사항은 055-940-3413으로 문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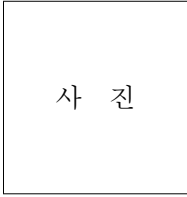
160mm×80mm

[별지 제5호서식]

##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

거창캐릭터  
삽입

사이버거창군민  
**체험쿠폰**



**농산물 체험권**

**급 원권**

사용기간 : 발행일부터 6개월

문의전화 : 055-

사용방법 : 사용 전 제시

NO. 09/05/02-개인아이디

**사이버거창군민이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거창군과 사이버거창군민간의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  
여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활력  
창출 도모

발행일 :    년    월    일

\* 본 체험권은 1회 1장만 사용가능합니다.

\* 체험권 사용 중 불편사항은 055-940-3413으로 문의하세요

160mm×80mm